

1. 대구광역시의회 정책연구위원회 설치·운영 조례안

의안 번호	5943
----------	------

발의년월일 : 2021. 3. 24.

발 의 자 : 대구광역시의회
운 영 위 원 장

1. 제안이유

- 대구광역시회원의 입법과 정책 관련 연구활동을 보다 심도 있게 지원하기 위해서 정책연구 관련분야의 외부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정책연구위원회를 설치하고자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정책연구위원회의 심의사항을 규정 함(안 제2조)
- 나. 정책연구위원회의 구성과 위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3조)
- 다. 정책연구위원회의 회의와 관련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7조)
- 라. 정책연구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규정함(안 제8조)
- 마. 정책연구위원회의 활동지원을 위해 지원부서를 두도록 규정함(안 제10조)

3. 제정안 : 붙임

4. 참고사항

- 가. 신·구조문 대비표 : 필요없음

나. 관계법령 : 붙임

다. 예산조치 : 필요없음

라. 입법예고 : 해당사항 없음

대구광역시 조례 제 호

대구광역시의회 정책연구위원회 설치·운영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의회 의원의 입법 및 정책 활동을 지원하고자 설치하는 정책연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기능) 대구광역시의회 정책연구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대구광역시의회 의원(이하 “의원”이라 한다)들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의안의 발굴·조사·연구
2. 시정 및 교육행정 전반에 관한 정책대안 제시 등 정책연구에 관한 사항
3. 대구광역시의회 의원 연구단체가 시행하는 정책연구용역과 관련한 사항
4. 대구광역시의회가 시행하는 정책연구용역과 관련한 사항
5. 그 밖에 위원회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

제3조(구성)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대구광역시의회 의장(이하 “의장”이라 한다)이 위촉한다.

1. 의장이 추천하는 의원 1명
2. 상임위원회에서 추천한 의원 각 1명
3. 교섭단체 대표가 추천하는 의원 각 1명
4.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의원 또는 각계 전문가

제4조(위원의 임기) ① 위원의 임기는 2년 이내로 하고, 한 차례만

연임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촉 당시 의원의 임기가 만료되면 위원은 임기가 남아있더라도 해촉된 것으로 본다.

제5조(위원의 해촉) 위원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또는 장기간 불출석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의장이 해촉할 수 있다.

제6조(위원장) 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, 부위원장은 위원의 동의를 받아 위원장이 지명한다.

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,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.

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제7조(회의)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,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되 정기회는 연1회 개최하고, 임시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개최한다.

1.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소집을 요구하는 경우

2. 의장의 소집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

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③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회의를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다.

제8조(소위원회) ① 위원회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.

② 소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정책연구과제의 사전검토·조정 등에 관한 사항

2. 정책연구과제의 전문적인 조사·연구 및 검토의견 제시
3. 그 밖에 입법 및 정책에 관한 연구
- ③ 소위원회 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한다.
- ④ 소위원회는 회의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한다.

제9조(의견청취 등) ① 위원회는 안건의 발굴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, 전문가 또는 그 밖의 이해관계인을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. 위원회로부터 출석요구 또는 자료제출 등을 요구 받은 관계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위원회의 요구에 따라야 한다.

②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토론회 또는 공청회를 개최하거나 전문기관 또는 단체, 전문가 등에게 조사 또는 연구 등을 하게 할 수 있다.

제10조(위원회 활동지원) 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처에 위원회의 활동 지원부서를 둔다.

제11조(수당 등)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과 제9조에 따라 참석한 관계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·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. 다만,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제12조(운영세칙)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

관 계 법 령

[지방자치법]

제22조(조례)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. 다만,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.